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22.10.07.(금)
위원정수 : 11명	재적위원 : 11명

1. 일 시 : 2022.10.12.(수) 11:00

2. 장 소 : 본관 3층 회의실

3. 참 석

구 분	인원	성 명	비 고
참석인원	6명	이동현, 이상무, 김봉한, 김용화, 곽기훈, 오윤지(학)	간사 손명현 서기 임수현
불참인원	5명	유상선, 진세혁, 엄정아, 정영훈(외), 박재현(학)	.

4. 안 건 : 임의특정목적기금(용자상환) 용도변경 인출 사용의 건

5. 회의내용

(손명현간사(이하 "간사")의 사회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11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어 이동현위원장(이하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 간사가 안건에 대해 설명하다.)

- 곽기훈위원 : 어차피 인출해도 적자 예상금액이 33억이기 때문에 인출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다만 해지시 발생하는 이자가 3,316,208원인데 만기를 채워야만 이자가 발생한다. 만기일은 12월 중순이다.
- 위원장 : 이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회계팀에서 등록금회계와 등록금회계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기 바란다. 연구적립금은 워낙 소액이라 사실 의미가 없고, 장학적립금과 퇴직적립금 역시 인출 사용하기 어렵다. 결국 특정목적적립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특정목적적립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 곽기훈위원 : 종류가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목적을 명확하게 적립하고,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한다.
- 위원장 : 기존에 용도변경 할때는 적립금 구분이 달랐기 때문에 기금 인출, 재적립, 재인출의 절차를 거쳤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하나?
- 곽기훈위원 : 오늘 안건의 경우 사학기관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라 특정목적적립금 내에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적립, 재인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간사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용자상환 목적의 특정목적기금을 인출하여 운영비로 사용한다하더라도 용자원리금은 문제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용자를 상환하는 목적으로는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는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자금을 전출하여 용자를 상환하고 있다.
- 김용화위원 : 그럼 지출 예상 금액 138억원 중에 용자상환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 간사 : 그렇다.
- 김용화위원 : 기존에 적립금 인출액을 4억원 예상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3.5억원을 인출하는 것이니 적자금액이 더 늘어나는 것인가?
- 곽기훈위원 : 그렇다. 그러나 비등록금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비회계에서의 문제이다.
- 위원장 : 용자상환 목적의 특정목적기금 349,988,252원과 해지시 발생하는 이자를 운영비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제청해주길 바란다.

(곽기훈 위원의 동의와 김봉한 위원의 재청으로 임의특정목적기금(용자상환) 349,988,252원과 해지시 발생하는 이자를 임의특정목적기금(운영비)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원안대로 결의하다.)

6. 폐 회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폐회하자는 위원장의 의견에 전체 위원의 만장일치로 11시 45분에 폐회하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회의제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22.10.12)

2. 회의일시 : 2022-10-12 수 11:00 ~ 11:45

3. 회의장소 : 본관 3층 회의실

4. 참석인원

구 분	인 원	성 명
참석인원	6명	이동현, 이상무, 오윤지, 김봉한, 김용화, 곽기훈
불참인원	4명	진세혁, 유상선, 박재현, 엄정아

5. 회의안건

임의특정목적기금(유자상환) 용도변경 인출 사용의 건

6. 내용첨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22.10.12.pdf 별첨

7. 의 견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22.10.12

위 원 장	이 동 현	2022/10/24 확인
위 원	이 상 무	2022/10/24 확인
위 원	오 윤 지	2022/10/24 확인
위 원	김 봉 한	2022/10/24 확인
위 원	김 용 화	2022/10/24 확인
위 원	곽 기 훈	2022/10/24 확인